[별표 11의4] <신설 2011.10.6>

범퍼의 안전기준(제93조 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정면 충격</th><th>모서리 충격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시험기준</td><td>진자 속도</td><td>4㎞/h</td><td>2.5㎞/h</td></tr>
<tr><td>충격선 높이</td><td colspan="2">445㎜
※ 다만,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·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시한 충격선 높이를 적용한다.</td></tr>
<tr><td>진자 중량</td><td colspan="2">차량중량</td></tr>
<tr><td>충격 방법</td><td>- 앞면 범퍼에 2회 충격
- 뒷면 범퍼에 2회 충격</td><td>- 앞면 범퍼의 좌측·우측 모서리에 각각 1회 충격
- 뒷면 범퍼의 좌측·우측 모서리에 각각 1회 충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판정기준</td><td colspan="2">1. 전조등, 방향지시등, 제동등, 비상등, 후퇴등, 차폭등, 후미등 및 후부반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. 다만, 전구의 필라멘트 파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시험 후 승강구, 후드 및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힐 것. 이 경우 승강구의 경우에는 충격시험 중 열려서는 아니된다.
3. 연료장치 및 냉각장치는 새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. 이 경우 각종 마개 및 캡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나 닫힐 수 있어야 한다.
4. 배기장치의 손상이나 이탈이 없을 것
5. 동력장치, 현가장치(타이어를 포함한다),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
※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 등은 시험 후에도 시험 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</td></tr>
</table>